

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에 의거 설치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
- 나.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, 전문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사무명 :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며, 25개구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장 역할을 하여야함
- 정신건강증진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
- 초발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
-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등 연구지원
- 알코올 등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
- 정신건강분야 기초조사 및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
-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사업,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지원
- 정신보건사업 정책연구 및 평가, 교육사업.
- 정신장애인 복지 및 자립재활 주거지원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시설명 :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40 일석기념관 3층~4층
- 시설규모 : 면적 695.8 m^2 (211평)
 - 3층:347.92 m^2 (105.4평), 4층:347.92 m^2 (105.4평)
- 지원시설 : 정신건강복지센터
- 개소일자 : 2005년 1월 27일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19. 3. 1.~2021. 12. 31.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재위탁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(예산안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수정될수 있음)

- 소요예산(2019년) : 3,035백만원 (시비100%)
 - 인건비(1,645만원),사업비(1,064백만원), 관리비(326백만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」 제15조
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②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의 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 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

- 「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
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-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(2018년)

: 3,018백만원 (시비100%)

-인건비(1,578백만원), 사업비(1,090백만원), 관리비(350백만원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박연수 (☎2133-7550)